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576호 2022. 10. 18.(화)

조 례

제5261호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5262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5263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6
제5264호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5265호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2
제5266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제5267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5268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제5269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5270호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5271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5272호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	24
제5273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5274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입 법 예 고

제2022-71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제2022-72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제2022-73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0

조 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1호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남도로의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남도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고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인력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 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2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의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내에”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로,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을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제14조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개월)		
활용구분	1. [] 법령 제·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연구목적			
연구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 활용 결과 		

※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결과 등록(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3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능정보화책임관

2. 위촉직 위원: 지능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학계, 언론계, 여성단체, 기업계 종사자 중에서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능정보화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3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도지사는 국가지식정보 및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환경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도지사는 도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4호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수업무 종사자의”를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5호**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경 남 공 보

제2576호

2022. 10. 18.(화)

2.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정비
3.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업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6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비대면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7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폭피해자로 등록(피해자 후손인 2세 및 3세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중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되어 있고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등록되어 있고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

제5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한다.

7. 원폭피해자의 의료비·문화비 지원 대책
8. 원폭피해자에 대한 법 제14조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
9.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8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상남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 사업
8. 구직·고용의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남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

경 남 공 보

제2576호

2022. 10. 18.(화)

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자·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은 제5조·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경 남 공 보

제2576호

2022. 10. 18.(화)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69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70호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의 제3호를 제4호로 해서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을 “청년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부담분 지원

③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71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옥내”를 “옥내·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5항 중 “도지사”를 “관장”으로 한다.

제2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제3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9조제6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및 제17조 관련 도립미술관 시설 사용허가 대상 및 사용료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및 용도	사용기준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다목적홀(307㎡)	1일	㎡	660원	202,000원	※ 1일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 기준 1시간 단위로 분할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한다.
냉·난방시설	시설 사용료의 20%				
방송영상장비	시설 사용료의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7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 또는 도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도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제2항 본문 중 “신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73호**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0월 18일

● 경상남도 조례 제5274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사청구와”를 “「지방자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청구 주민수)”를 “(감사청구 주민의 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21조 제1항”으로, “19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심의회 구성)”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6조”를 “제25조”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를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위원은 도시교통업무 담당 국장, 감사위원장이 된다.”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특수관계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한 지역 선거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가 소속한 부서의 공무원이나 소속한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 남 공 보

제2576호

2022. 10. 18.(화)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접수된 사안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심의회”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법 예 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1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근거 법령 명기(안 제1조)
- 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명칭 및 수립주기 변경(안 제4조 ~ 제5조)
- 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
- 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7조)
- 마.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8조 ~ 제9조)
- 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20조 ~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7.(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 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의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의 반영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1호부터 5호까지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분야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委囑)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20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3명 이내의 공동협의회장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공동협의회장은 경제부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남·여 각 1명으로 하며, 호선된 공동협의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 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실·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속가능발전관련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과 관련된 사항 등

제22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장은 상임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4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국내외 협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간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2.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제26조(시·군 지속가능발전 지원) 도지사는 도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계획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조사 등

제27조(위탁)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평가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2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관련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삭제(안 제27조 ~ 제30조)
- 상위법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7.(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 : 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4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2조제4항제3호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u></p> <p>제27조(설치 및 구성) ①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지방의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3명 이내의 공동회장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회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남·여 각 1명으로 하며, 호선된 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한다.</p> <p>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촉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 기후환경산림국장 및 도시교통국장</p> <p>2. 도교육청 교육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3.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방의제21 관련업무 담당국장</p> <p>제2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2.6.>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과 관련된 사항 등 <p>제29조(사무처) ① 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p> <p>② 사무처장은 상임 회장이 협의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제3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p>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③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32조(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3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p>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73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에 관한 근거 조례 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근거 조문 변경(안 제1조)
 - (현행)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 → (개정)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0조
- 나. 상위법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현행) 공동회장, 개의하고, 호선하고,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개정) 공동협의회장, 개의(開議)하고, 호선(互選)하고,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1. 7.(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 : 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제1조 중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를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동회장”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동회장, 조례 제27조제5항”을 “공동협의회장, 조례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